

## 영등포구청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의안 번호	125
----------	-----

제안년월일 : 2000. 5. 19  
발의자 : 강두석의원외5인

###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우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민과 우리구의회 의사를 구정 전반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청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함.

### 2. 주요골자

가. 구정질문 및 답변

- 기간 : 2000. 5. 25 ~ 5. 26(2일간)
- 장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 출석대상 : 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재무국장, 생활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 3. 참고사항

- 가. 지방자치법 제37조
- 나.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 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결의(안)

의안 번호	124
----------	-----

제안년월일 : 2000. 5. 19  
발의자 : 박남오의원외6인

### 1. 제안이유

- (1) 결산검사위원 : 영등포구의회 의원 1인과 공인회계사 2인
- (2) 선임방법
  - 가. 의장이 추천하는 결산검사위원 3인을 본회의 의결로 선임
  - 나. 선임된 검사위원 대표자는 위원중 연장자로 한다.

### 2. 주요골자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등포구청장은 우리구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므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무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의원 1인 및 공인회계사 2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함

### 3. 관련법규

- 가. 지방자치법 제125조
- 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 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4조